#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의 안<br>번 호 | 1166 |
|---|---|

제출년월일 : 2014. 5. 27.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제안이유

2014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재의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172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함.

## 2. 조례제정 경위

가. 발 의 : 안병배 의원 외 3인
나. 의 결 : 인천광역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2014. 5. 2.)
다. 우리시 이송 : 2014. 5. 7.
라. 재의요구기간 : 2014. 5. 27.

## 3. 조례안의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주민들의 거주사실 확인과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나.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이주한 주민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함.(안 제9조)

## 4. 재의요구 사유

-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주민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는 그 지급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향후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의 지출까지를 포함할 수 있음에 따라「지방자치법」제141조(경비의 지출)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배됨.

## 5.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사항 : 별첨 1

나.「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별첨 2

다. 안전행정부 조례안 검토의견 : 별첨 3

[별첨 1]

##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별첨 2]

●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천재지변 등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이주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
2. 기타 위와 유사한 사정으로서 이 조례 제4조의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3조(법령과의 관계)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지 상실주민 등 지원대상자의 심사·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거지 상실주민 또는 지원대상자의 심사·결정
2. 제6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3. 지원금 등 지급액 및 지급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

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의원
3. 시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인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금) 시장은 주거지 상실주민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급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에 따른다.

제8조(지급청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 등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출국자, 재소자 등 부득이 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되돌려 받고, 되돌려 주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그밖의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 지시(통보)

1. 귀 시에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에 사전 보고( '14.5.12)한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민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자치사무의 범주를 벗어나 국가사무의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지방자치법」제172조 제1항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니 그 결과를 우리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재의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조례명 :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재의요구 사유

○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주민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는 그 지급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향후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의 지출까지를 포함할 수 있음에 따라「지방자치법」제41조(경비의 지출)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배됨. 끝.

안전행정

수신자 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 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관(선거의회과장)

주무관 강동균 행정사무관 곽준길 재정정책과장 전결 2014. 5. 23. 서승우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2327 (2014. 5. 23.) 접수 자치행정과-7423 (2014. 5. 24.)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4116 팩스번호 02-2100-4311 / kangdg@mospa.go.kr / 비공개(5)